

신청기관 : 경기남부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베트남의 보훈제도 및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현황

임범상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지사

### I 베트남 보훈제도 현황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근대사 또한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 추구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세기 이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전쟁,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 등 수 십년에 걸쳐 대규모의 전쟁을 2차례나 치러야 했으며, 비록 전쟁에는 승리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에 베트남 내 보훈 정책은 대체로 위와 같은 독립운동 및 2차례의 전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참전용사 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 피해자 등 광범위한 범위의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지원제도를 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부분으로 보인다.

### II 베트남의 현행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 1.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베트남의 현행 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된 “혁명유공자 우대에 관한 국회 상무위원회의 법령(PHÁP LỆNH ƯU ĐÃI NGƯỜI CÓ CÔNG VỚI CÁCH MẠNG CỦA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Ordinance No. 26/2005/PL-UBTVQH11, 이하 ‘혁명유공자법’이라 한다)”<sup>1)</sup>이다. 위 혁명유공자법은 2007년 6월 21일 개정법령(Ordinance No. 35/2007/PL-UBTVQH12), 2012년 7월 16일 개정법령(Ordinance No. 04/2012/PL-UBTVQH13)에 의하여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으며, 위 각 수정 법령의 내용을 통합하여 2012년 통합 문서(No. 1/VBHN-VPQH)가 제정되었다<sup>2)</sup>.

1 법령(PHÁP LỆNH, Ordinance)은 헌법 제91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회 상무위원회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법률문서를 의미한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Luat, Law)과는 개념 상 구분되나, 그 실질적인 의미나 효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

2 아래에서 언급하는 혁명유공자법의 조항 번호 등은 통합문서의 기재에 근거한다.

위 혁명유공자법에 관하여는 현재 유효한 3개의 하위 시행령이 존재하는데, 31번 시행령(Decree No. 31/2013/ND-CP)의 경우 각 국가유공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유형별 상세한 지원제도의 내용을, 99번 시행령(Decree No. 99/2018/ND-CP)의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102번 시행령(Decree No. 102/2018/ND-CP)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조금 및 수당의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혁명유공자법과 별도로, 혁명유공자법과 같은 일자에 제정된 “참전군인에 관한 국회 상무위원회의 법령(PHÁP LỆNH CỤU CHIẾN BINH CỦA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Ordinance No. 27/2005/PL-UBTVQH11, 이하 ‘참전군인법’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만 동법은 일반적인 국가유공자(혁명유공자)와 별도로 참전군인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한 특별법에 가깝고, 그 내용 또한 참전군인의 날, 베트남 참전군인 협회의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는 위 혁명유공자법 및 관련 시행령을 중심으로 베트남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2.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내용

### 1) 국가유공자의 정의

혁명유공자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혁명유공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945년 1월 1일 이전의 혁명운동가
- 1945년 1월 1일부터 동년 8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혁명운동가
- 열사(Liệt sĩ)<sup>3)</sup>
- 베트남 영웅 어머니(Bà mẹ Việt Nam anh hùng)<sup>4)</sup>
- 인민군 영웅(Anh hùng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및 노동 영웅(Anh hùng Lao động)<sup>5)</sup>
- 상이 병사(Thương binh, người hưởng chính sách như thương binh)<sup>6)</sup>
- 질병에 의한 피해 군인(bệnh binh)<sup>7)</sup>
- 유독물질에 감염된 저항운동가<sup>8)</sup>

3 '열사'란 혁명 혹은 전쟁 과정에서 직접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체포 혹은 고문, 부상으로 인하여 사후 사망하거나 실종처리된 자를 의미한다(법 제11조).

4 '베트남 영웅어머니'는 혁명 및 전쟁 과정에서 기여 또는 희생을 한 베트남 여성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이다. 자격요건은 ① 2명 이상의 자녀가 열사로 사망하였거나 ② 1명의 자녀가 열사로 사망하였고 1명 이상의 자녀가 장애율 81% 이상의 장애를 입었거나 ③ 유일한 자녀가 열사로 사망하였거나 ④ 자녀와 남편이 열사로 사망한 경우이다.

5 각 관련 법률에 따라 인민군 영웅 훈장 및 노동 영웅 훈장을 추서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상이병사'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21% 이상을 상실한 군인 또는 경찰로 보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법 제19조)

7 이는 전쟁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노동능력의 61% 이상을 상실한 군인 또는 경찰로 관련 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법 제23조)

8 1961년 8월부터 1975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미군의 유독물질(고엽제를 의미한다) 사용으로 21% 이상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불임, 장애아동 출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한다(법 제26조).

- 적군에 의하여 체포/감금되었던 혁명운동가 및 저항운동가
- 조국 해방 및 보호를 위하여 활동한 저항운동가
- 기타 혁명활동 관련 운동가

## 2) 지원제도의 상세 내용

베트남의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는 크게 보조금 등 금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 사회적 지원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혁명유공자법 제4조). 다만 혁명유공자법에서는 각 유공자별로 적용되는 제도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조금 및 수당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 여부와 관련되는 시행령의 경우 지원제도 및 수당 금액의 변경에 따라 1~3년의 기간마다 개정을 반복하여 왔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본 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무려 총 18개의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바, 위 시행령은 모두 한시법에 해당하여 그 중 대부분인 15개의 시행령은 기간 도과로 폐지되고 현재 유효한 시행령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 ① 보조금 제도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 및 수당은 크게 월정 지급, 연간 지급, 일시 지급 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월정 지급 보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친척들에 대하여 지급되며 그 금액은 약 70만 베트남 동에서 450만 베트남 동 수준이다(아래 [표1] 참조). 연간 지급 보조금은 국가유공자의 추모 예배 관련 비용, 자녀들의 학비 보조금 등이며 연간 20~50만 베트남 동 수준이다. 일시 지급 보조금은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 보조금 기준의 4~20배 수준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국가유공자 및 그 친척, 유족 등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보조금은 그 항목이 다양하고 폭이 넓다. 각 항목 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금액 수준은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베트남의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에는 상당한 정도로 평가되며, 나이가 넓은 적용 대상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위 제도의 혜택을 받는 혁명유공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에 관한 국가 예산은 한 해 약 20조 베트남 동에 이른다고 한다<sup>9)</sup>.

9 김종욱, "베트남 보훈정책에 관한 고찰 : 혁명유공자 우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0권 2호, 한국보훈학회, 2011년, 제185면 이하

I 표 11 월정 지급 보조금 및 수당

월정 지급 보조금 및 수당 (단위: 천동)			
구분	대상 국가유공자	2018. 6. 12.이후	
		보조금	수당
1	1945년 1월 1일 이전 혁명운동가		
	이탈자	1,693	287/선임자
	- 비이탈자	2,874	
	사망한 혁명운동가의 친척에 대한 보조금	1,515	
	사망한 혁명운동가의 친척에 대한 추가 보조금 <sup>10)</sup>	1,212	
2	1945년 1월 1일부터 동년 8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혁명운동가	1,566	
	사망한 혁명운동가의 친척에 대한 보조금	850	
	사망한 혁명운동가의 친척에 대한 추가 부양보조금	1,212	
3	열사의 친척		
	- 열사 1인의 친척에 대한 보조금	1,515	
	- 열사 2인의 친척에 대한 보조금	3,030	
	- 열사 3인의 친척에 대한 보조금	4,545	
	- 배우자에 대한 보조금(기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1,515	
	- 사망한 열사의 친척에 대한 추가 부양보조금	1,212	
4	베트남 영웅 어머니 (위 3항에 따라 열사 친척의 사망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		1,270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베트남 영웅 어머니 부양자	1,515	
5	인민군 영웅 및 노동 영웅	1,270	
6	상이병사	별지 <sup>11)</sup>	
	B급 상이병사	별지 <sup>12)</sup>	
	- 81% 이상의 노동력 상실 상이병사 또는 B급 상이병사		760
	- 81% 이상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특별한 상처가 있는 상이병사 또는 B급 상이병사		1,558
	- 상이병사 또는 B급 상이병사를 부양하는 자		

10 부양보조금은 주로 혁명유공자의 친척으로 부양할 자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된다.

11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소 1,021,000베트남 동(노동능력상실률 21%)부터 최대 4,858,000베트남 동(노동능력상실률 100%)까지 구분된다.

12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소 843,000베트남 동(노동능력상실률 21%)부터 최대 4,019,000베트남 동(노동능력상실률 100%)까지 구분된다.

월정 지급 보조금 및 수당 (단위: 천동)				
구분	대상 국가유공자	2018. 6. 12.이후		
		보조금	수당	
	+ 노동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인 경우	1,515		
	+ 노동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이고 특별한 상처가 있는 경우	1,946		
	- 노동능력 상실률이 61% 이상이었던 사망한 상이병사 또는 B급 상이병사의 친척	850		
	사망한 상이병사 또는 B급 상이병사 친척에 대한 추가 부양보조금	1,212		
7	질병에 의한 피해 군인			
	+ 노동능력상실률 41% - 50%	1,581		
	+ 노동능력상실률 51% - 60%	1,970		
	+ 노동능력상실률 61% - 70%	2,511		
	+ 노동능력상실률 71% - 80%	2,895		
	+ 노동능력상실률 81% - 90%	3,465		
	+ 노동능력상실률 91% - 100%	3,859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		760	
	노동능력 상실률 81% 이상으로 심각한 병을 앓는자		1,515	
	질병 군인의 부양자			
	+ 노동능력상실률 81%	1,515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으로 심각한 병을 앓는자	1,946		
	노동능력상실률 61% 이상이었던 사망한 질병 군인의 친척	850		
	사망한 질병 군인의 친척에 대한 추가 부양보조금	1,212		
	8	유독물질 감염 피해자		
		+ 노동능력상실률 21% - 40%	1,150	
+ 노동능력상실률 41% - 60%		1,924		
+ 노동능력상실률 61% - 80%		2,697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		3,455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			760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으로 특별히 심각한 병을 앓는 자			1,515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인 피해자를 부양하는 가족		1,515		
- 노동능력상실률 61% 이상인 사망한 피해자의 친척		850		

월정 지급 보조금 및 수당 (단위: 천동)			
구분	대상 국가유공자	2018. 6. 12.이후	
		보조금	수당
9	사망한 피해자의 친척에 대한 추가 부양보조금	1,212	
	유독물질피해자의 자녀(기형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 61% - 80%	909	
	+ 노동능력상실률 81% 이상	1,515	
	적군에 의하여 체포/감금되었던 혁명운동가 및 저항운동가	909	
10	“Fatherland of Merits” 또는 “With merits to the country” 훈장을 받은 자 또는 그의 가족		
	+ 월정 보조금	1,515	
	+ 부양 보조금 (부양하는 자가 없을 경우)	1,212	
	“the Resistance Medal” 훈장을 소유한 자 또는 그의 가족		
	+ 월정 보조금	891	
	+ 부양 보조금 (부양하는 자가 없을 경우)	1,212	
11	취학 지원 보조금		
	- 인민군 영웅, 노동영웅, 상이 병사 - 열사, 1945년 1월 1일 이전의 혁명운동가, 1945년 1월 1일부터 동년 8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혁명운동가, 인민군 영웅, 노동능력상실률 61% 이상인 상이병사 및 B급 상이병사, 질병 피해 군인, 유독물질 피해자의 자녀	1,515	
	- 노동능력상실률 21%-60%인 상이병사 및 B급 상이병사, 유독물질 피해자, 노동능력상실률 41%-60%인 질병피해병사의 자녀	760	

## ② 주거지원 제도

혁명유공자법 제4조 제4항에서는 혁명유공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1996. 2. 27.자 총리 결정(Decision No. 118-TTg)을 통하여 혁명유공자에 대한 주거 지원방안을 공표한 바 있으며, 해당 결정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당 결정에서는 혁명유공자법에 따른 혁명유공자들에게 1) 정의주택(Nhà tình nghĩa) 제공, 2) 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 지원, 3) 국가 주택 판매 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4) 기타 그 밖의 방법으로 혁명유공자들의 주거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I 표 21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정책]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정책		
구분	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1	혁명유공자 중 무주택자로 형편이 어려운 자	은혜주택 제공
2	혁명유공자 중 평균적인 지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	주택 건설/유지보수 자금 지원
3	혁명유공자가 국가주택(정의주택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 아래 유형을 제외한 혁명유공자	토지사용료 전액 면제
	- 노동능력상실률 61-80%의 상이 또는 질병군인	토지사용료 90% 감면
	- 노동능력상실률 41-60%의 상이 또는 질병군인	토지사용료 80% 감면
	- 노동능력상실률 21-40%의 상이 또는 질병군인	토지사용료 70% 감면
	- 적군에 의해 체포/감금되었던 해방운동가	토지사용료 65% 감면

다만 국가기관의 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베트남 정부는 위와 같은 주거지원 정책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위 정의주택의 건설은 대체로 국가 외에 각종 사회단체가 조성한 기금(이른바 '정의기금')을 사용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국내 인민, 가구, 단체는 물론 외국계 투자법인 등의 기부금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 ③ 의료지원 제도

혁명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혁명유공자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로 의료보험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의료보험법(Law No. 25/2008/QH12) 제12조 제9항, 제15항에서 혁명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험의 수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 위 혁명유공자 등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④ 기타 사회적 지원 제도

혁명유공자법 제4조 제5항은 혁명유공자들이 취업 및 창업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하며, 국가교육제도 하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 보조금으로 교육 지원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주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취업 알선 및 우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I 베트남의 현행 국가유공자 지원 기관

### 1. 노동보훈사회부(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혁명유공자법 제34조 이하에 따르면, 중앙부처인 노동보훈사회부는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주무부처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기안
-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계획 및 조직, 설계
-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실행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관련 주무부처로서 관련 부서 협의 등 책임
- 현재 파악되지 않는 국가유공자의 정보 파악 및 신고 수령
- 혁명유공자법의 실행에 관한 감시, 의견 수령, 실행 등
-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관련 국제 협조 및 통계자료 작성

### 2. 지역 노동보훈사회 전담부서

혁명유공자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역인민위원회는 국가의 혁명유공자 지원정책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지역인민위원회 내 노동보훈사회 전담 부서는 인민위원회를 도와 지원정책의 실행을 전담한다.

베트남 내 지방정부는 크게 시/성(1단계), 현/군(2단계), 사/방(3단계)로 구분된다. 시/성 인민위원회에는 노동보훈사회국(Sở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이 혁명유공자 지원 정책의 지역 내 실행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 현/군 인민위원회, 사/방 인민위원회에서도 각 노동보훈사회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참고문헌

김종욱, “베트남 보훈정책에 관한 고찰 : 혁명유공자 우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0권 2호, 한국보훈학회, 2011.